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4.

발의자 : 임종성 · 김철민 · 인재근
안호영 · 김현권 · 이원욱
강훈식 · 신창현 · 박정
노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,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

또한,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

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0조제6항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기존 차량 대폐차 시 차령 기준 완화(안 제84조제2항제2호)
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 또는 시·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4조제2항제2호 중 “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”을 “그 차령이 6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재정 지원)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0조(재정 지원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국가 또는 시·도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4조(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, 등록, 증차 또는 대폐차(代廢車: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</p>	<p>제84조(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